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82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박용갑 · 이해식 · 소병훈
이연희 · 황명선 · 윤준병
조인철 · 이병진 · 염태영
백승아 · 권칠승 · 서삼석
백혜련 · 장경태 · 김 윤
한준호 · 윤후덕 · 손명수
안태준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로 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제공되는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제84조제1항 단서 중 “2년”을 “2년(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③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제공되는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u>
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u>	⑤ ----- ----- -----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대통령</u>

